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 천 수 칙

Ⅰ.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머 리 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학대로 인해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발전된 아동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영아 대상의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현황들을 제시하였고, 특히 영아 대상 학대 중 방임에 집중하여 유발 요인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방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임에도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심각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질적인 측면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피해아동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 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목 차

Ⅰ 서 론 1

Ⅱ 영아대상 학대 발생 현황 9

1. 연도별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 현황 ··· 11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장소 ··· 11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빈도 ··· 12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유형 ··· 13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 14
   1)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 14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 14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 15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 ··· 15
6.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 17
   1)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 17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 17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8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19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 ··· 19
   6)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 20
   7)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 21

Ⅲ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비교 ▌ 23

1.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발생장소 ····· 25

2.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발생빈도 ····· 26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 28

1)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28

2)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28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29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 31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 33

1)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 33

2)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 33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34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36

5)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 37

6)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 38

7)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 38

5.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요인 분석 ····· 40

1)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위험요인 분석(중복사례 포함) ····· 40

2)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위험요인 분석(중복사례 미포함) ····· 45

Ⅳ 결론 ▌ 49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51

2. 영아대상 방임 사례에 대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 ····· 56

참고문헌 ····· 59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 현황 ····· 11
<표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장소 ····· 12
<표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빈도 ····· 12
<표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유형 ····· 13
<표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 15
<표 6>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 ····· 16
<표 7>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8
<표 8>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19
<표 9>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 ····· 20
<표 10>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 21
<표 1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장소 ····· 25
<표 12>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빈도 ····· 27
<표 13>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28
<표 14>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29
<표 15>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30
<표 16>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 32
<표 17>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 33
<표 18>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 34
<표 19>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35
<표 20>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 36
<표 21>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 37

<표 22>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 38
<표 23>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 39
<표 24> 학대행위자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포함)에 미치는 영향 ····· 42
<표 25>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포함)에 미치는 영향 ····· 44
<표 26> 학대행위자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미포함)에 미치는 영향 ····· 46
<표 27>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미포함)에 미치는 영향 ····· 48

그 림 목 차

<그림 1>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 14
<그림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 14
<그림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 17
<그림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 17
<그림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 21

Ⅰ. 서 론

제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자녀양육은 유교 사항의 영향으로 부모에게 많은 부분이 치중되었으나 각종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 또한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져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되어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피해아동 대상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2013년 6월 기준, 1개소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47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아동학대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사례 DB 구축·관리를 함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다양한 연구 및 정책 제안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1998년도에 발생한 '영훈이 남매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영훈이는 부모에 의해 심한 신체학대를 받고 그의 누나는 집 앞마당에 매장 당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시민에 의해 발견됨) 등 많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1년 10,1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약 3.2배 정도가 증가하여 전체 신고 접수 건수에서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매년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며,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에도 방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활동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쉬운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고, 방임은 발생률이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방임이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신고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임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잠재된 숫자가 더욱 많을 것이다. 따라서 방임의 심각성과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김현옥, 2007).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실태조사 차원으로 시작하여 피해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다루는 등의 연구로 발전하여 왔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의 피해 경험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

었으며, 주로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비행 등 전반적인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상 등에 미치는 영향(김광혁, 2009; 김정란, 2003; 김준호·김선애, 1997; 신혜영·최해림, 2003; 윤혜미, 1997; 이용교, 1998; 하은경·박천만, 2002; 홍은주, 1998) 등을 다루어 학대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요인을 알아보는 연구 또한 다수 실시되었는데, 주로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장애, 문제행동 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이나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 성격 및 기질, 양육태도, 부부갈등, 알콜남용, 정신질환 등의 부모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장화정, 2002; 김대현 외, 1997; 김혜영·석말숙, 2003; 박명숙, 2002; 이재연·한지숙, 2003; 정준미, 1998).

이처럼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방임을 소극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 다른 요인과의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거나 신체학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방임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아동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잘 보살펴주지 않으며 아동복지에 관심이 없는 태만 행위라 할 수 있는데(홍미·김효진, 2007), 이는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학대 유형과는 구별되는 관

점에서 방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방임은 아동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총 87명에 달한다. 2011년에는 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는데 이 중 9명이 방임에 의해 사망하였고 무엇보다 만 2세까지의 영아가 5명이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학대 유형 중 방임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신체학대보다 방임에 의한 사망이 많다는 것은 방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방임이 영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아동기를 대상으로 학대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영아기에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영아기의 특성상 자발적 연구 참여가 어렵고 학대가 발생한다고 해도 발견이 쉽지 않아 신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에 취약한 영아가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을 위한 연구와 제도가 절실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피해아동으로 분류된 6,058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영아(만 0~2세)에 해당하는 708건(11.7%)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영아 대상 사례 중 방임 사례와 다른 학대 유형의 사례를 비교할 뿐 아니라 아동 및 학대행위자 특성 중 영아 방임 사례의 예

측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영아 방임 예방에 적합한 서비스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영아대상 학대 발생 현황

제2장 영아대상 학대 발생 현황

1. 연도별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 현황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의 현황을 연도별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피해아동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연도별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피해 아동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영아	224	226	238	389	333	329	362	427	455	530	708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장소

영아대상의 학대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가 516건(7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56건(7.9%), 병원44건(6.2%), 기타 39건(5.5%), 집근처 또는 길가 27건(3.8%)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장소

구분	N (%)
가정 내	516 (72.9)
집근처 또는 길가	27 (3.8)
친척집	10 (1.4)
이웃집	2 (0.3)
어린이집	56 (7.9)
학원	2 (0.3)
병원	44 (6.2)
복지시설	12 (1.7)
기타	39 (5.5)
전체	708 (100.0)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빈도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353건(4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례는 117건(16.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발생빈도

구분	N (%)
거의 매일	353 (49.9)
2~3일에 한 번	89 (12.6)
1주일에 한 번	82 (11.5)
2주일에 한 번	22 (3.1)
1개월에 한 번	26 (3.7)
2~3개월에 한 번	11 (1.6)
6개월에 한 번	5 (0.7)
1년에 한 번	3 (0.4)
일회성	117 (16.5)
전체	708 (100.0)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유형

영아 대상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454건(48.1%)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정서학대는 263건(27.9%), 신체학대는 162건(17.2%)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으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중 방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에 집중하여 원인 및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표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유형

구분	N (%)
신체학대	162 (17.2)
정서학대	263 (27.9)
성학대	7 (0.8)
방임	454 (48.1)
유기	57 (6.0)
전체	943 (100.0)

중복포함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08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여아는 300건(42.4%)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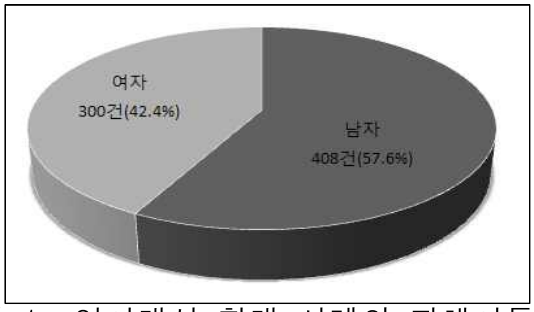

<그림 1>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연령의 경우, 만 1세 미만이 273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만 2세와 만 1세는 각각 238건(33.6%), 197건(27.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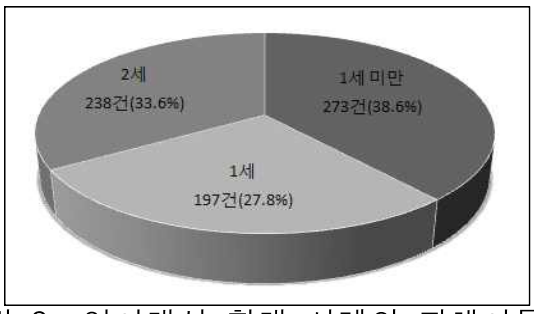

<그림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영아대상 사례 중 가장 두드러진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으로 308건(43.5%)이었으며, 이 외에는 미혼부모가정 103건(14.5%), 모자가정 81건(11.4%), 동거(사실혼 포함) 59건(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구분		N (%)
친부모가정		308 (43.5)
부자 가정	편부가정(사별)	2 (0.3)
	편부가정(이혼)	11 (1.5)
	편부가정(가출)	24 (3.4)
	편부가정(별거)	7 (1.0)
	소계	44 (6.2)
모자 가정	편모가정(사별)	1 (0.1)
	편모가정(이혼)	37 (5.2)
	편모가정(가출)	22 (3.1)
	편모가정(별거)	21 (3.0)
	소계	81 (11.4)
미혼부모가정		103 (14.5)
재혼가정		35 (4.9)
친인척보호		18 (2.6)
동거(사실혼 포함)		59 (8.4)
가정위탁		4 (0.6)
입양가정		3 (0.4)
시설보호		3 (0.4)
기타		13 (1.8)
파악 안 됨		37 (5.3)
전체		708 (100.0)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피해아동의 특성은 특성 없음으로 319건

(34.0%)이었으며, 이 외에는 정서·정신건강 226건(24.1%), 발달·신체건강 223건(23.8%)이었다.

<표 6>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

구분		N (%)	
장 애	청각장애	1	((0.1)
	지체장애	1	((0.1)
	지적장애	1	((0.1)
	뇌병변장애	4	((0.5)
	기타장애	1	((0.1)
	소계	8	((0.9)
정서·정신 건강	주의산만	46	((4.9)
	과잉행동	10	((1.1)
	불안	87	((9.3)
	애착문제	50	((5.3)
	무력감	1	((0.1)
	우울	2	((0.2)
	낮은 자아존중감	6	((0.6)
	성격 및 기질문제	17	((1.8)
	탐식 및 결식	7	((0.8)
	소계	226	((24.1)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4	((1.5)
	가출	2	((0.2)
	성문제	4	((0.4)
	학교 부적응	3	((0.3)
	잦은 결석	1	((0.1)
	늦은 귀가	1	((0.1)
	학습문제	16	((1.8)
	소계	41	((4.4)
발달·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51	((5.4)
	언어문제	47	((5.0)
	급만성 질병	21	((2.2)
	영양결핍	29	((3.1)
	대소변문제	13	((1.4)
	위생문제	62	((6.7)
	소계	223	((23.8)
특성 없음		319	((34.0)
기타		120	((12.8)
전체		937	(100.0)

중복포함

6.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영아대상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472건(66.7%)으로 남성(229건, 32.3%)에 비해 많은 수를 보였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7건(1.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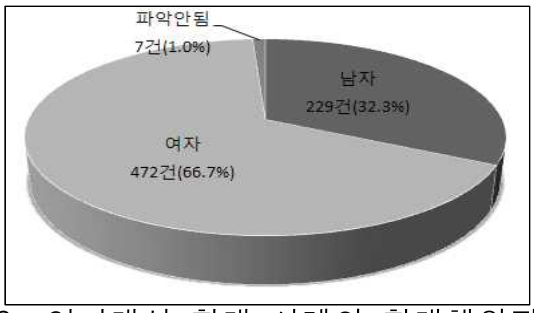

<그림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2)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영아대상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평균 33.9세(표준편차 9.9)로 나타났으며, 이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0대가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대 28.5%, 40대 17.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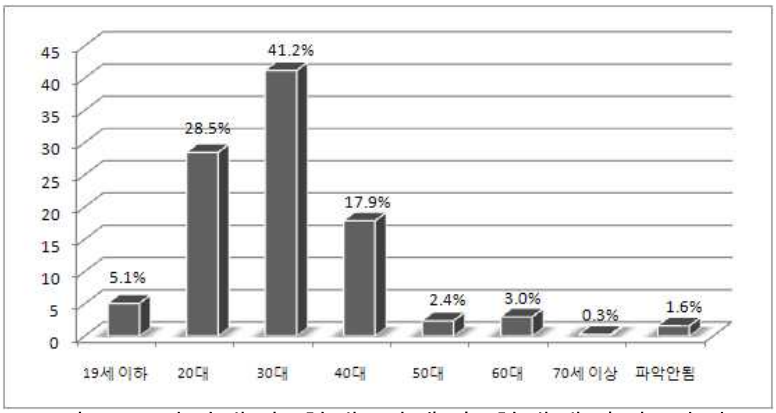

<그림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3)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612건(86.4%)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친모에 의한 사례가 395건(55.8%)이었다. 영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90%에 가까운 사례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7>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구분		N (%)
부모	친부	212 (29.9)
	친모	395 (55.8)
	계모	2 (0.3)
	양부	2 (0.3)
	양모	1 (0.1)
	소계	612 (86.4)
친인척	친조부	4 (0.6)
	친조모	3 (0.5)
	외조모	6 (0.8)
	친인척	6 (0.8)
	소계	19 (2.7)
타인	부,모의 동거인	3 (0.4)
	교원	2 (0.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1)
	시설종사자	51 (7.3)
	이웃	2 (0.3)
	위탁부	1 (0.1)
	위탁모	3 (0.4)
	소계	63 (8.9)
기타		13 (1.9)
파악 안 됨		1 (0.1)
전체		708 (100.0)

4)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영아대상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행위자들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직이 254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부 124건(17.5%), 단순노무직 62건(8.8%), 서비스·판매직 42건(5.9%), 전문직 37건(5.2%), 비정규직 35건(4.9%)으로 나타났다.

<표 8>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구분	N (%)
입법공무원	3 (0.4)
전문직	37 (5.2)
준전문직	6 (0.8)
사무직	10 (1.4)
서비스, 판매직	42 (5.9)
농·어·축산업	12 (1.7)
기능직	13 (1.8)
기계장치조작원	7 (1.1)
단순노무직	62 (8.8)
자영업	12 (1.7)
전업주부	124 (17.5)
학생	9 (1.3)
비정규직	35 (4.9)
무직	254 (35.9)
기타	41 (5.8)
파악 안 됨	41 (5.8)
전체	708 (100.0)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

학대행위자 소득의 경우, 50만 원 미만이 227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 원과 50~100만 원은 각각 118건(16.7%), 117건(16.5%)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1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학대행위자는 전체의 6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9>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

구분	N (%)
50만 원 미만	227 (32.1)
50～100만 원	117 (16.5)
100～150만 원	118 (16.7)
150～200만 원	62 (8.8)
200～250만 원	19 (2.6)
250～300만 원	24 (3.4)
300만 원 이상	24 (3.4)
파악 안 됨	117 (16.5)
전체	708 (100.0)

6)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여부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비수급권에 해당하는 자가 501건(70.8%)으로 수급권 대상자(167건, 23.6%)에 비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40건(5.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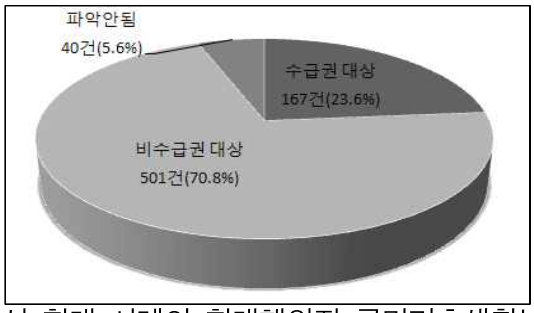

<그림 5>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7)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777건(32.4%)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604건(25.2%)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갈등 235건(9.8%), 성격 및 기질문제 168건(7.0%)이었다.

<표 10> 영아대상 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구분	N (%)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777 (32.4)
중독문제	138 (5.7)
질환문제	131 (5.4)
성격 및 기질문제	168 (7.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04 (25.2)
어릴 적 학대경험	66 (2.8)
폭력성	86 (3.5)
전과력	7 (0.3)
성문제	16 (0.7)
원치 않는 아동	95 (4.0)
부부 및 가족 갈등	235 (9.8)
종교문제	6 (0.3)
특성 없음	14 (0.6)
기타	23 (1.0)
파악 안 됨	32 (1.3)
전체	2,398 (100.0)

중복포함

Ⅲ.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비교

제3장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비교

본 절에서는 영아대상 사례의 요인들을 각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특히 방임의 특성을 다른 학대 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발생장소

<표 11>에는 각 유형별로 학대가 발생한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방임의 경우, 총 454건 중 345건(76.0%)이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 병원은 33건(7.3%), 어린이집은 26건(5.7%)이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도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장소의 순서는 방임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어린이집, 집근처 또는 길가 순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학대는 모든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표 11>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장소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가정 내	124(76.5)	215(81.7)	7(100.0)	345(76.0)	4(7.0)
집근처 또는 길가	8(4.9)	6(2.3)	0(0.0)	9(2.0)	11(19.3)
친척집	1(0.6)	1(0.4)	0(0.0)	8(1.8)	1(1.8)
이웃집	1(0.6)	0(0.0)	0(0.0)	1(0.2)	1(1.8)
어린이집	25(15.4)	34(12.9)	0(0.0)	26(5.7)	3(5.3)
학원	0(0.0)	1(0.4)	0(0.0)	1(0.2)	0(0.0)
병원	0(0.0)	0(0.0)	0(0.0)	33(7.3)	18(31.6)
복지시설	1(0.6)	3(1.1)	0(0.0)	6(1.3)	3(5.3)
기타	2(1.2)	3(1.1)	0(0.0)	25(5.5)	16(28.1)
전체	162(100.0)	263(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2.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발생빈도

다음 <표 12>에는 학대 유형별 발생빈도를 교차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방임 사례는 거의 매일에 걸쳐 발생한 경우가 302건(6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3일에 한 번,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은 각각 43건(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거의 매일 발생하는 사례와 2~3일에 한 번,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발생하는 사례가 전체의 77.6%를 차지하였다. 신체학대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5건(27.8%)이었으며, 다음은 1주일에 한 번, 일회성, 2~3일에 한 번 발생한 사례 순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걸쳐 0건에서 2건의 빈도가 나타났으며, 두드러지게 집중된 구간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기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전체 57건 중 32건(56.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유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는 자녀를 집이 아닌 곳에 버리고 도망가는 유형인데, 위의 분석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이러한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빈도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거의 매일	45(27.8)	85(32.3)	1(14.3)	302(66.5)	20(35.1)
2~3일에 한 번	30(18.5)	63(24.0)	1(14.3)	43(9.5)	0(0.0)
1주일에 한 번	34(21.0)	56(21.3)	1(14.3)	43(9.5)	1(1.8)
2주일에 한 번	8(4.9)	13(4.9)	0(0.0)	7(1.5)	0(0.0)
1개월에 한 번	8(4.9)	15(5.7)	2(28.6)	7(1.5)	3(5.3)
2~3개월에 한 번	1(0.6)	5(1.9)	1(14.3)	8(1.8)	0(0.0)
6개월에 한 번	2(1.2)	2(0.8)	0(0.0)	1(0.2)	0(0.0)
1년에 한 번	1(0.6)	2(0.8)	0(0.0)	1(0.2)	1(1.8)
일회성	33(20.4)	22(8.4)	1(14.3)	42(9.3)	32(56.1)
전체	162(100.0)	263(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1)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영아 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방임 유형의 경우 남아가 252건(55.5%)으로 여아(202건, 44.5%)에 비해 많았다. 그 밖의 학대 유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여아에 비해 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남	103(63.6)	151(57.4)	6(85.7)	252(55.5)	37(64.9)
여	59(36.4)	112(42.6)	1(14.3)	202(44.5)	20(35.1)
전체	162(100.0)	263(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2)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음으로는 피해아동의 연령을 각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방임 유형에서는 만 1세 미만이 189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만 2세는 136건(30.0%), 만 1세는 129건(28.4%)으로 나타났다. 유기도 방임과 유사하게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유기 사례 57건 중 46건(80.7%)이 만 1세 미만에 해당하였다. 반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성학대는 만 1세 미만에 비해 만 2세를 대상으로 하여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다. 다시 말

해 만 1세 미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방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1세 미만	40(24.7)	61(23.6)	2(28.6)	189(41.6)	46(80.7)
1세	45(27.8)	81(30.8)	0(0.0)	129(28.4)	5(8.8)
2세	77(47.5)	120(45.6)	5(71.4)	136(30.0)	6(10.5)
전체	162(100.0)	263(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이 속한 가족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표 15>와 같이 유기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는 친부모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유기의 경우 미혼부모가정에 속한 아동이 21건(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의 특성 상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14건(24.6%)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15>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친부모가정		102(63.0)	148(56.5)	6(85.7)	161(35.5)	8(14.0)
부자 가정	편부가정(사별)	0(0.0)	1(0.4)	0(0.0)	1(0.2)	0(0.0)
	편부가정(이혼)	3(1.9)	4(1.5)	0(0.0)	7(1.5)	0(0.0)
	편부가정(가출)	3(1.9)	6(2.3)	0(0.0)	21(4.6)	1(1.8)
	편부가정(별거)	1(0.6)	1(0.4)	0(0.0)	6(1.3)	0(0.0)
모자 가정	편모가정(사별)	0(0.0)	0(0.0)	0(0.0)	0(0.0)	1(1.8)
	편모가정(이혼)	5(3.1)	12(4.6)	0(0.0)	33(7.3)	1(1.8)
	편모가정(가출)	5(3.1)	2(0.8)	0(0.0)	15(3.3)	2(3.5)
	편모가정(별거)	2(1.2)	2(0.8)	0(0.0)	20(4.4)	1(1.8)
미혼부모가정		11(6.8)	13(5.0)	1(14.3)	77(17.0)	21(36.8)
재혼가정		14(8.6)	23(8.8)	0(0.0)	10(2.2)	1(1.8)
친인척보호		4(2.5)	2(0.8)	0(0.0)	15(3.3)	2(3.5)
동거(사실혼 포함)		8(4.9)	21(8.0)	0(0.0)	46(10.1)	2(3.5)
가정위탁		1(0.6)	1(0.4)	0(0.0)	3(0.7)	0(0.0)
입양가정		0(0.0)	0(0.0)	0(0.0)	3(0.7)	0(0.0)
시설보호		0(0.0)	1(0.4)	0(0.0)	2(0.4)	0(0.0)
파악 안 됨		2(1.2)	20(7.6)	0(0.0)	25(5.5)	14(24.6)
기타		1(0.6)	5(1.9)	0(0.0)	9(2.0)	3(5.3)
전체		162(100.0)	262(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이번에는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각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특성의 경우 중복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먼저 방임 유형은 특성이 없는 경우가 319건(34.0%)으로 두드러졌고 다음은 정서·정신건강이 226건(24.1%), 발달·신체건강은 223건(23.8%) 순이었다. 신체학대도 이와 비슷하게 특성 없음이 79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정신건강 61건(26.8%), 발달·신체건강 49건(21.5%) 순이었다. 정서학대는 정서·정신건강이 12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 없음 120건(33.7%), 발달·신체건강 63건(17.7%) 또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성학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특성 없음(1건 11.1%)과 정서·정신건강(2건, 22.2%)에 해당하는 아동이 비교적 적은 반면, 적응·행동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4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유기의 경우는 특성 없음의 경우가 30건(48.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특성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표 16>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장 애	청각장애	0 (0.0)	1 (0.3)	0 (0.0)	1 (0.1)	0 (0.0)
	지체장애	0 (0.0)	1 (0.3)	0 (0.0)	1 (0.1)	0 (0.0)
	지적장애	0 (0.0)	0 (0.0)	0 (0.0)	1 (0.1)	0 (0.0)
	뇌병변장애	1 (0.4)	0 (0.0)	0 (0.0)	4 (0.5)	1 (1.6)
	기타장애	0 (0.0)	0 (0.0)	0 (0.0)	1 (0.1)	1 (1.6)
	소계	1 (0.4)	2 (0.6)	0 (0.0)	8 (0.9)	2 (3.2)
정서·정신 건강	주의산만	16 (7.0)	30 (8.4)	1 (11.1)	46 (4.9)	0 (0.0)
	과잉행동	3 (1.3)	5 (1.4)	0 (0.0)	10 (1.1)	0 (0.0)
	불안	18 (7.9)	49 (13.8)	1 (11.1)	87 (9.3)	0 (0.0)
	애착문제	14 (6.1)	23 (6.5)	0 (0.0)	50 (5.3)	1 (1.6)
	무력감	0 (0.0)	1 (0.3)	0 (0.0)	1 (0.1)	0 (0.0)
	우울	0 (0.0)	1 (0.3)	0 (0.0)	2 (0.2)	0 (0.0)
	낮은 자아존중감	2 (0.9)	3 (0.8)	0 (0.0)	6 (0.6)	0 (0.0)
	성격 및 기질문제	5 (2.2)	9 (2.5)	0 (0.0)	17 (1.8)	0 (0.0)
	탐식 및 결식	3 (1.3)	1 (0.3)	0 (0.0)	7 (0.8)	0 (0.0)
	소계	61 (26.8)	122 (34.3)	2 (22.2)	226 (24.1)	1 (1.6)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6 (2.6)	9 (2.5)	1 (11.1)	14 (1.5)	0 (0.0)
	가출	0 (0.0)	0 (0.0)	0 (0.0)	2 (0.2)	0 (0.0)
	성문제	3 (1.3)	1 (0.3)	3 (33.3)	4 (0.4)	0 (0.0)
	학교 부적응	1 (0.4)	1 (0.3)	0 (0.0)	3 (0.3)	0 (0.0)
	잦은 결석	0 (0.0)	0 (0.0)	0 (0.0)	1 (0.1)	0 (0.0)
	늦은 귀가	0 (0.0)	0 (0.0)	0 (0.0)	1 (0.1)	0 (0.0)
	학습문제	5 (2.2)	2 (0.6)	0 (0.0)	16 (1.8)	0 (0.0)
	소계	15 (6.6)	13 (3.7)	4 (44.4)	41 (4.4)	0 (0.0)
발달·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15 (6.6)	15 (4.2)	0 (0.0)	51 (5.4)	4 (6.5)
	언어문제	14 (6.1)	19 (5.3)	0 (0.0)	47 (5.0)	0 (0.0)
	급만성 질병	3 (1.3)	1 (0.3)	0 (0.0)	21 (2.2)	2 (3.2)
	영양결핍	3 (1.3)	5 (1.4)	0 (0.0)	29 (3.1)	2 (3.2)
	대소변문제	4 (1.8)	6 (1.7)	0 (0.0)	13 (1.4)	0 (0.0)
	위생문제	10 (4.4)	17 (4.8)	1 (11.1)	62 (6.7)	0 (0.0)
	소계	49 (21.5)	63 (17.7)	1 (11.1)	223 (23.8)	8 (12.9)
특성 없음		79 (34.6)	120 (33.7)	1 (11.1)	319 (34.0)	30 (48.4)
기타		23 (10.1)	36 (10.1)	1 (11.1)	120 (12.8)	21 (33.9)
전체		228 (100.0)	356 (100.0)	9 (100.0)	937 (100.0)	62 (100.0)

중복포함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1)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본 절에서는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학대행위자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가장 먼저 행위자의 성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임 사례의 행위자 중에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훨씬 많았는데, 여자는 327건(72.0%)인 반면 남자는 126건(27.8%)이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유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학대의 경우,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자는 6건(85.7%)인 반면 여자는 1건(14.3%)이었다.

<표 17>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남	65(40.1)	110(41.8)	6(85.7)	126(27.8)	7(12.3)
여	96(59.3)	153(58.2)	1(14.3)	327(72.0)	45(78.9)
파악 안 됨	1(0.6)	0(0.0)	0(0.0)	1(0.2)	5(8.8)
전체	162(100.0)	263(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2)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다음 <표 18>의 내용은 각 학대 유형별 행위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이다. 유기를 제외하고는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반면, 유기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은 30대 다음으로 20대, 40대 순이었고 정서학대와 성학대는 30대에 이어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기는 20대가 22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19세 이하의 순이었다. 유기를 범한 행위자 중 19세 이하는 8건(14.0%)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18>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19세 이하	3(1.9)	4(1.5)	0(0.0)	31(6.8)	8(14.0)
20대	39(24.1)	58(22.1)	0(0.0)	145(31.9)	22(38.6)
30대	83(51.2)	113(43.0)	4(57.1)	176(38.8)	15(26.3)
40대	29(17.9)	62(23.6)	3(42.9)	71(15.6)	5(8.8)
50대	4(2.5)	7(2.7)	0(0.0)	10(2.2)	0(0.0)
60대	1(0.6)	17(6.5)	0(0.0)	18(4.0)	0(0.0)
70세 이상	1(0.6)	0(0.0)	0(0.0)	2(0.4)	0(0.0)
파악 안 됨	2(1.2)	2(0.8)	0(0.0)	1(0.2)	7(12.3)
전체	162(100.0)	263(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3)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다음으로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학대 유형에 걸쳐 부모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성학대를 제외하고는 친모에

의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성학대의 71.4%는 친부에 의해 발생하였다.

<표 19>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부모	친부	59(36.4)	102(38.8)	5(71.4)	120(26.4)	7(12.3)
	친모	63(38.9)	108(41.4)	1(14.3)	286(63.0)	46(80.7)
	계모	1(0.6)	2(0.8)	0(0.0)	0(0.0)	0(0.0)
	양부	0(0.0)	0(0.0)	0(0.0)	2(0.4)	0(0.0)
	양모	0(0.0)	0(0.0)	0(0.0)	1(0.2)	0(0.0)
	소계	123(75.9)	213(81.0)	6(85.7)	409(90.1)	53(93.0)
친인척	친조부	2(1.2)	3(1.1)	0(0.0)	2(0.4)	0(0.0)
	친조모	1(0.6)	1(0.4)	0(0.0)	2(0.4)	0(0.0)
	외조모	1(0.6)	1(0.4)	0(0.0)	5(1.1)	0(0.0)
	친인척	2(1.2)	1(0.4)	0(0.0)	4(0.9)	0(0.0)
	소계	6(3.7)	6(2.3)	0(0.0)	13(2.9)	0(0.0)
타인	부,모의 동거인	1(0.6)	2(0.8)	0(0.0)	0(0.0)	0(0.0)
	교사	2(1.2)	0(0.0)	0(0.0)	0(0.0)	0(0.0)
	학원 강사	0(0.0)	1(0.4)	0(0.0)	0(0.0)	0(0.0)
	시설 종사자	23(14.2)	34(12.9)	0(0.0)	28(6.2)	0(0.0)
	이웃	0(0.0)	1(0.4)	1(14.3)	0(0.0)	0(0.0)
	위탁부	0(0.0)	0(0.0)	0(0.0)	1(0.2)	0(0.0)
	위탁모	1(0.6)	2(0.8)	0(0.0)	2(0.4)	0(0.0)
	소계	27(16.7)	40(15.2)	1(14.3)	31(6.8)	0(0.0)
기타		6(3.7)	4(1.5)	0(0.0)	1(0.2)	3(5.3)
파악 안 됨		0(0.0)	0(0.0)	0(0.0)	0(0.0)	1(1.8)
전체		162(100.0)	262(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4)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유형별 행위자의 직업 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방임의 경우 무직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189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부로 79건(17.4%)이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도 무직-주부 순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성학대와 유기는 다소 상이한 분포를 띄었는데, 성학대의 경우 사무직과 기타가 각각 2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유기는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25건(43.9%)이었으며, 무직은 17건(29.8%)이었다.

<표 20>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입법공무원, 관리직	0(0.0)	1(0.4)	0(0.0)	2(0.4)	0(0.0)
전문직	19(11.7)	21(8.0)	0(0.0)	17(3.7)	0(0.0)
준전문직	3(1.9)	2(0.8)	0(0.0)	1(0.2)	0(0.0)
사무직	5(3.1)	7(2.7)	2(28.6)	2(0.4)	1(1.8)
서비스,판매직	14(8.6)	15(5.7)	0(0.0)	25(5.5)	2(3.5)
농,어,축산업	1(0.6)	5(1.9)	0(0.0)	8(1.8)	0(0.0)
기능직	2(1.2)	7(2.7)	0(0.0)	4(0.9)	1(1.8)
기계장치조작원	0(0.0)	3(1.1)	0(0.0)	3(0.7)	1(1.8)
단순노무직	9(5.6)	36(13.7)	1(14.3)	47(10.4)	2(3.5)
자영업	4(2.5)	3(1.1)	1(14.3)	6(1.3)	1(1.8)
주부	26(16.0)	63(24.0)	1(14.3)	79(17.4)	0(0.0)
학생	2(1.2)	0(0.0)	0(0.0)	6(1.3)	2(3.5)
비정규직	10(6.2)	12(4.6)	0(0.0)	26(5.7)	5(8.8)
무직	51(31.5)	65(24.7)	0(0.0)	189(41.6)	17(29.8)
기타	14(8.6)	17(6.5)	2(28.6)	21(4.6)	0(0.0)
파악 안 됨	2(1.2)	6(2.3)	0(0.0)	18(4.0)	25(43.9)
전체	162(100.0)	262(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5)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다음 <표 21>에서는 영아대상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았다. 방임의 경우,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의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인 행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100만 원의 수준이었다. 이는 <표 20>에 제시된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 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다시 말해 영아대상 학대행위자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성학대와 유기의 경우,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성학대는 150~200만 원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가장 많았고(3건, 42.9%), 유기 행위자의 52.6%는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소득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50만 원 미만	40(24.7)	60(22.8)	0(0.0)	173(38.1)	14(24.6)
50～100만 원	31(19.1)	38(14.4)	2(28.6)	89(19.6)	2(3.5)
100～150만 원	27(16.7)	60(22.8)	0(0.0)	75(16.5)	5(8.8)
150～200만 원	17(10.5)	32(12.2)	3(42.9)	30(6.6)	5(8.8)
200～250만 원	5(3.1)	10(3.8)	0(0.0)	7(1.5)	0(0.0)
250～300만 원	11(6.8)	13(4.9)	1(14.3)	7(1.5)	0(0.0)
300만 원 이상	11(6.8)	15(5.7)	0(0.0)	9(2.0)	1(1.8)
파악 안 됨	20(12.3)	35(13.3)	1(14.3)	64(14.1)	30(52.6)
전체	162(100.0)	262(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6)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이어서 학대 유형별 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수급권에 해당하는 자에 비해 그렇지 않는 행위자가 더욱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22>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구분 N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수급권 대상	33(20.4)	61(23.2)	2(28.6)	119(26.2)	8(14.0)
비수급권 대상	123(75.9)	191(73.0)	4(57.1)	318(70.0)	30(52.6)
파악 안 됨	6(3.7)	10(3.8)	1(14.3)	17(3.7)	19(33.3)
전체	162(100.0)	262(100.0)	7(100.0)	454(100.0)	57(100.0)

중복포함

7)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마지막으로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방임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경우가 777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604건(25.2%)이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서도 학대행위자가 양육태도나 방법에서 부족함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그 뒤를 이었다. 성학대와

유기는 다소 상이한 분포를 보였는데, 성학대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9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폭력성이었다(4건, 17.4%). 유기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각각 32건(23.4%)이었으며, 자녀가 원치 않는 아동이라는 응답 또한 21건(15.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3> 아동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219	(35.1)	353	(32.7)	9	(39.1)	777	(32.4)	32	(23.4)
중독문제	39	(6.3)	81	(7.5)	2	(8.7)	138	(5.7)	7	(5.1)
질환문제	33	(5.3)	45	(4.2)	0	(0.0)	131	(5.4)	2	(1.5)
성격 및 기질문제	62	(9.9)	109	(10.1)	2	(8.7)	168	(7.0)	3	(2.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18	(18.9)	227	(21.0)	2	(8.7)	604	(25.2)	32	(23.4)
어릴 적 학대경험	21	(3.4)	31	(2.9)	2	(8.7)	66	(2.8)	2	(1.5)
폭력성	34	(5.4)	66	(6.1)	4	(17.4)	86	(3.5)	2	(1.5)
전과력	3	(0.5)	2	(0.2)	0	(0.0)	7	(0.3)	0	(0.0)
성문제	2	(0.3)	3	(0.3)	2	(8.7)	16	(0.7)	3	(2.2)
원치 않는 아동	19	(3.0)	26	(2.4)	0	(0.0)	95	(4.0)	21	(15.3)
부부 및 가족 갈등	58	(9.3)	119	(11.0)	0	(0.0)	235	(9.8)	8	(5.8)
종교문제	1	(0.2)	2	(0.2)	0	(0.0)	6	(0.3)	0	(0.0)
특성 없음	7	(1.1)	5	(0.5)	0	(0.0)	14	(0.6)	2	(1.5)
기타	5	(0.8)	10	(0.9)	0	(0.0)	23	(1.0)	4	(2.9)
파악 안 됨	3	(0.5)	2	(0.2)	0	(0.0)	32	(1.3)	19	(13.9)
전체	624	(100.0)	1,081	(100.0)	23	(100.0)	2,398	(100.0)	137	(100.0)

중복포함

5.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방임 사례를 구분할 때 2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 기준은 방임과 더불어 다른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중복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를 방임으로 취급한 것이며, 두 번째는 오직 방임에 해당하는 사례만 방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방임 사례와 방임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위험요인 분석(중복학대 포함)

영아대상 방임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방임 사례를 구분할 때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처리하였다.

(1)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영아 방임에 미치는 영향

먼저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영아대상 방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4>에 제시되었다.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먼저 학대행위자 소득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행위자에 비해 50만 원 미만의 행위자가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3.24배 높

았으며, 50~150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행위자는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3.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을수록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친부, 친모, 그리고 그 외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와 친모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친부에 의해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4.02배 높았으며, 친모는 2.96배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의 특성의 분석 결과 중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에 해당하는 행위자(2.20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자(4.56배)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방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표 24> 학대행위자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포함)에 미치는 영향

구분		OR	95% CI	p-value
성별	여	1.83	0.48-7.01	0.378
	남	1.00	Referent	
연령	19세 이하	3.30	0.84-12.87	0.086
	20대	1.33	0.73-2.43	0.355
	30대	1.00	0.58-1.72	0.999
	40세 이상	1.00	Referent	
직업유형	무직	0.93	0.53-1.64	0.799
	기타	0.94	0.40-2.21	0.885
	직업 있음	1.00	Referent	
소득	50만 원 미만	3.24	1.78-5.90	0.000***
	50~150만 원 미만	3.30	1.93-5.63	0.000***
	150만 원 이상	1.00	Referent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여부	비수급권 대상	1.09	0.67-1.77	0.742
	수급권 대상	1.00	Referent	
피해아동과의 관계	친부	4.02	1.16-13.91	0.028*
	친모	2.96	1.37-6.39	0.006**
	그 외	1.00	Referent	
특성§	성격 및 기질문제	0.19	0.08-0.45	0.000***
	어릴 적 학대경험	0.61	0.18-2.05	0.422
	정신질환 및 장애	1.27	0.49-3.28	0.616
	원치 않는 아동	1.04	0.31-3.43	0.951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2.20	1.16-4.19	0.016*
	스트레스	0.99	0.44-2.24	0.989
	사회적 고립	2.47	0.73-8.34	0.147
	경제적 어려움	4.56	2.29-9.08	0.000***
	배우자 폭력	0.08	0.02-0.24	0.000***

*p<0.05, **p<0.01, ***p<0.001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 특성(0=없음, 1=있음)

(2)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 방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중 영아대상 방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아동의 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만 0세의 아동의 경우 만 2세 아동에 비해 1.76배 정도 방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편부가정(가출), 편모가정(이혼), 편모가정(별거),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 포함), 기타에 속한 아동이 친부모가정에 비해 방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반대로 재혼가정은 친부모가정에 비해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같은 경우, 친부와 친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친부에 의해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2.88배 높았으며, 친모는 5.94배 정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의 특성의 분석 결과 중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불안(2.31배), 애착문제(5.61배)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방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표 25>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포함)에 미치는 영향

구분		OR	95% CI	p-value
성별	여	1.22	0.84-1.76	0.290
	남	1.00	Referent	
연령	0세	1.76	1.13-2.76	0.013*
	1세	1.38	0.87-2.18	0.170
	2세	1.00	Referent	
가족유형	사별가정	0.36	0.03-4.47	0.427
	편부가정(이혼)	1.70	0.44-6.51	0.438
	편부가정(가출)	10.22	2.86-36.51	0.000***
	편부가정(별거)	6.30	0.73-54.77	0.095
	편모가정(이혼)	5.23	1.72-15.95	0.004**
	편모가정(가출)	1.33	0.50-3.52	0.567
	편모가정(별거)	15.53	2.02-119.51	0.008**
	미혼부모가정	1.67	0.97-2.90	0.066
	재혼가정	0.32	0.14-0.73	0.007**
	친인척보호	7.63	1.97-29.51	0.003**
	동거(사실혼 포함)	2.99	1.48-6.06	0.002**
	기타	4.07	1.41-11.77	0.010*
	친부모가정	1.00	Referent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친부	2.88	1.50-5.54	0.001**
	친모	5.94	3.12-11.32	0.000***
	그 외	1.00	Referent	
특성†	반항, 충동, 공격성	0.37	0.05-2.76	0.329
	주의산만	2.02	0.42-9.60	0.379
	불안	2.31	1.06-5.02	0.035*
	애착문제	5.61	1.73-18.21	0.004**
	신체발달지연	2.44	0.79-7.51	0.119

*p<0.05 **p<0.01 ***p<0.001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 특성(0=없음, 1=있음)

2)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위험요인 분석(중복학대 미포함)

영아대상 방임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방임 사례를 구분할 때 중복학대를 미포함하여 처리하였다.

(1) 학대행위자 특성이 영아방임에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영아대상 방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본 분석 결과 중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학대행위자 소득으로 150만 원 이상에 비해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3.27배, 50~150만 원은 2.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행위자 특성 중 두드러진 결과는 학대행위자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가질수록 방임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방임 발생 가능성이 약 6.3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산출된다.

<표 26> 학대행위자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미포함)에 미치는 영향

구분		OR	95% CI	p-value
성별	여	1.36	0.34-5.41	0.664
	남	1.00	Referent	
연령	19세 이하	2.35	0.84-6.56	0.103
	20대	1.72	0.97-3.08	0.065
	30대	1.36	0.80-2.34	0.258
	40세 이상	1.00	Referent	
직업	무직	1.06	0.62-1.82	0.827
	기타	1.50	0.65-3.46	0.345
	직업 있음	1.00	Referent	
소득	50만 원 미만	3.27	1.80-5.96	0.000***
	50~150만 원 미만	2.63	1.52-4.54	0.001**
	150만 원 이상	1.00	Referent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여부	비수급권 대상	1.44	0.92-2.26	0.109
	수급권 대상	1.00	Referent	
피해아동과의 관계	친부	2.23	0.63-7.91	0.215
	친모	1.72	0.78-3.81	0.182
	그 외	1.00	Referent	
특성§	성격 및 기질문제	0.10	0.04-0.25	0.000***
	어릴 적 학대경험	0.43	0.14-1.38	0.156
	정신질환 및 장애	1.57	0.68-3.63	0.287
	원치 않는 아동	1.11	0.39-3.17	0.848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1.19	0.68-2.08	0.538
	스트레스	0.81	0.39-1.72	0.589
	사회적 고립	0.80	0.30-2.12	0.658
	경제적 어려움	6.36	3.47-11.67	0.000***
	배우자 폭력	0.11	0.03-0.42	0.001**

* p<0.05 ** p<0.01 *** p<0.001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 학대행위자 문제(0=없음, 1=있음)

(2)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방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영아대상 방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아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아동의 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만 0세의 아동의 경우 만 2세 아동에 비해 2.08배 정도 방임 비율이 높았으며, 만 1세는 1.68배 높았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편부가정(이혼), 편부가정(가출), 편부가정(별거), 편모가정(이혼), 편모가정(별거), 미혼부모가정,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 포함)에 속한 아동이 친부모가정에 비해 방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같은 경우, 친부와 친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친부는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해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2.08배 높았으며, 친모는 3.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 방임(중복학대 미포함)에 미치는 영향

구분		OR	95% CI	p-value
성별	여	1.27	0.90-1.78	0.178
	남	1.00	Referent	
연령	0세	2.08	1.35-3.19	0.001**
	1세	1.68	1.08-2.60	0.021*
	2세	1.00	Referent	
가족유형	사별가정	0.82	0.07-10.25	0.881
	편부가정(이혼)	4.40	1.18-16.45	0.028*
	편부가정(가출)	6.80	2.59-17.86	0.000***
	편부가정(별거)	13.37	1.53-116.85	0.019*
	편모가정(이혼)	2.52	1.19-5.31	0.015*
	편모가정(가출)	2.52	0.99-6.42	0.054
	편모가정(별거)	7.62	2.42-24.01	0.001**
	미혼부모가정	2.11	1.28-3.48	0.003**
	재혼가정	0.30	0.11-0.82	0.019*
	친인척보호	7.87	2.49-24.85	0.000***
	동거(사실혼 포함)	1.82	1.01-3.29	0.046*
	기타	2.50	0.99-6.30	0.053
	친부모가정	1.00	Referent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친부	2.08	1.05-4.13	0.036*
	친모	3.69	1.89-7.21	0.000***
	그 외	1.00	Referent	
특성†	반항, 충동, 공격성	0.54	0.06-5.18	0.590
	주의산만	2.00	0.49-8.20	0.338
	불안	1.80	0.92-3.53	0.088
	애착문제	0.92	0.41-2.06	0.838
	신체발달지연	1.61	0.64-4.09	0.312

* p<0.05 ** p<0.01 *** p<0.001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 : 피해아동 문제(0=없음, 1=있음)

Ⅳ. 결 론

제4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11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및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이 만 0~2세인 영아(708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아대상 사례(방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학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한 해 동안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는 총 70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의 11.7%를 차지한다. 영아대상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학대의 발견이 비교적 어려운 영아의 특성 상 잠재된 사례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아대상 학대 중 거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며(72.9%), 거의 매일 발생하는 사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49.9%)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 중 남아(57.6%)가 여아(42.4%)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지만, 만 0세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정(43.5%)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피해아동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특성 없음이었으

며 전체의 34.0%에 해당하였다. 이는 영아기의 특성 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불안이나 위생문제, 애착문제, 주의산만 등의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은 무직과 주부가 각각 35.9%, 17.5%로 높을 비율을 차지했다. 소득은 50만 원 미만(32.1%)이 가장 많았으며, 1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5.3%로 학대행위자의 소득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32.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전체의 25.2%에 해당하였다.

영아학대의 사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를 제외했을 때 방임이 전체의 48.1%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의 경우 방임으로 인한 학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아대상 사례의 학대 유형별 비교 분석 결과 중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대상 학대 사례 중 가장 많은 학대 유형을 차지한 방임사례는 총 454건으로 이는 영아대상 전체 사례의 48.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영아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방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영아대상 방임 사례 중 76.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66.5%는 거의 매일 발생하였는

데, 이는 전체 영아대상 아동학대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아방임 사례의 피해아동은 남아(55.5%)가 여아(44.5%)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만 1세 미만(41.6%), 만 2세(30.0%), 만 1세(28.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35.5%로 가장 많았고 미혼부모가정(17.0%), 동거(사실혼 포함)(10.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특성의 경우, 특성 없음이 가장 많았고(34.0%), 다음은 정서·정신건강, 발달·신체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경우, 전체 영아대상 사례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여성(72.0%)이 남성(27.8%)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학대와 비교할 때 방임의 경우 특별히 학대행위자의 성별이 여성이 뚜렷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무직과 주부인 경우가 전체의 59.0%를 나타내었다. 소득은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가 전체의 74.2%이었고, 학대행위자의 70.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비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영아대상 학대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다음은 영아대상 방임 사례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은 방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결과이며, 이 때 방임을 포함한 중복학대를 방임으로 취급한 방식(중복학대

포함)과 오직 방임만 단독적으로 발생한 사례만 방임으로 처리한 방식(중복학대 미포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방임을 포함한 중복학대를 방임으로 처리한 경우,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직업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는 방임 발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학대행위자의 소득, 피해아동과의 관계, 특성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임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대행위자의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와 비교할 때, 50만 원 미만과 50~150만 원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가 방임을 발생시킬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친부 또는 친모일 경우 방임을 일으킬 우려가 더욱 많았다. 마지막으로 특성의 경우,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한 학대행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가정 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방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임만 단독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방임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변수는 학대행위자의 소득과 특성이었다. 소득의 경우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학대행위자가 50만 원 미만과 50~150만 원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에 비해 비교적 방임을 발생시킬 확률이 낮았다. 또한 학대행위자 특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방임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의 결과(방임에 중복학대를 포함)와 비교해보면 중복학대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

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변수가 방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피해아동 특성이 영아대상 방임 발생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방임에 중복학대를 포함한 경우, 피해아동의 연령, 가족유형, 행위자와의 관계, 특성이 영향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만 2세의 아동에 비해 만 0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방임에 처할 위험이 더욱 높았다.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정 형태에 속한 아동에 비해 편부가정(가출)에 해당하는 아동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별거와 이혼으로 인해 편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친부모가정에 비해 각각 15.5배, 5.2배 높게 나타나, 영아대상 방임에 있어 한부모가족 형태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 포함) 및 기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이러한 변수가 영아대상 방임 여부와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변수를 살펴보면 친부모가 아닐 경우에 비해 친부, 친모일 때 방임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이 불안이나 애착문제 측면에서의 특성을 가질 경우,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방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 특성 중 영아대상 방임(중복학대 미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족유형, 행위자와의 관계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2세의 아동에 비해 만 0세, 1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가출에 의한 편모가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편부 및 편

모가정에서 방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족에 속한 아동의 경우, 친부모가정에 비해 방임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감안할 때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미혼부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사실혼 포함)에서도 영아대상 방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에게서 방임을 받을 가능성이 친부모가 아닐 경우에 비해서 2.1배,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대상 방임 사례에 대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영아대상 방임은 친모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고,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이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먼저 방임을 예방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부모교육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족 해체로 인해 생겨난 가족 형태들은 대부분 친부모가정에 비해서 방임을 포함한 학대에 매우 취약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볼 때,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닌 학대나 방임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사회문

제, 특히 빈곤과 가정해체로 학대의 고위험군이 된 가정은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유형에 비해 방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방임의 특성 상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방임 사례에 비해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또한 유아기 아동부터는 어린이집 등의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주 양육자 이외의 성인이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아의 경우,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드림스타트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군의 영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영아대상 방임 사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임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방임의 위험성이 높았는데, 영아기가 아동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임을 감안할 때, 방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은 추후 회복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심각한 점은 완전한 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영아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투자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김대현·이승규·서영성·신동학·김용호·이원두·윤용진(1997). 가정 내 아동 구타 발생과 관련된 요인. 대한가정의학회지, 18(12), 1436-1451.

김정란(2003). 가족폭력노출 실태분석을 통한 피해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방안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1-23.

김준호·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 5-28.

김현옥(2007). 방임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양육자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20.

김혜영·석말숙(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김혜영·장화정(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6(2), 269-286.

박명숙(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혜영·최해림(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2), 295-307.

윤혜미(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1), 95-120.

이용교(1998).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서비스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 75-97.

이재연·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 63-78.

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 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하은경·박천만(2002). 아동학대실태 및 관련요인.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4), 351-362.

홍미·김효진(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으로 본 아동의 심리·사회 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방임에 관한 연구

▌ **인 쇄 일 :** 2012년 12월

▌ **발 행 일 :** 2012년 12월

▌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